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3일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진수, 정진술, 박순규, 김평남,
최기찬, 김정태, 김제리, 김경영, 노승재,
이정인, 장인홍, 김혜련, 한기영, 임종국,
유 용, 김경우, 박상구, 김재형, 신정호
전병주, 성흠제, 김희걸 의원(23명)

1. 제안이유

소방현장에서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 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함. (안 제5조)

- 라.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 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병원을 지정·운영토록하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함. (안 제6조)
- 마.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용토록 함. (안 제8조)
- 사.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해당없음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 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 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